

영등포구의회  
2007년 제1차 정례회

# 2006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7. 7. 9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2006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김 완 섭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I. 일반회계

### 1.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

#### 가.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국별(항)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예산현액
일반회계	구의회사무국	2,801,547		323,603	3,125,150
	의사운영	2,103,995			2,103,995
	의정활동	697,552		323,603	1,021,155

회계별	국별	지출원인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구의회사무국	2,925,291	2,925,291		199,859
	의사운영	1,994,837	1,994,837		109,158
	의정활동	930,454	930,454		90,701

## 1)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항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율 (%)	사유별					
				사업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 절감	예산집 행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지방의회 운영	3,125,150	199,859	6.4		58,240	37,125	104,494		

## 2) 예비비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지출결정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사 유	지출결정 (지출일)
계	323,603	315,096		8,507		
의회비 월정수당	292,560	292,560		0	지방의회 월정수당 등 관련예산 확보	06. 5.29 (06.6.5)
의회비 국민연금부담금	20,726	12,424		8,302	지방의회 월정수당 등 관련예산 확보	06. 5.29 (06.7.10)
의회비 국민연금보험금	10,317	10,112		205	지방의회 월정수당 등 관련예산 확보	06. 5.29 (06.7.10)

## 2. 검토의견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1억 2,515만원 이며 그 중 93.6%에 해당하는 29억 2,52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4%에 해당하는 1억 9,986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5,824만원, 예산절감 3,713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44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5.2%에 해당하는 1억915만 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3,976만 5,000원은 개별호봉이 아닌 기준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발생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40만 6,000원은 한마음체육대회 미 개최로 발생되었으며 국외여비 900만원은 지방선거 및 원구성에 따른 일정부족으로 미집행 되었으며, 의원상해부담금 1,200만원과 증인·감정인 등에게 지급되는 기타보상금 45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종이회의록에서 CD회의록으로 제작하고, 기타 인쇄비, 공공 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1,974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8.9%에 해당하는 9,070만 1,200원이 불용 되었으며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2,640만원, 국외여비 3,679만원은 지방선거 및 원구성에 따른 일정부족으로 미 집행되었으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974만 3,17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16만 4,130원, 의원 국민연무부담금 830만 2,400원은 연금 제외 대상의 증가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예산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계획변경과 취소, 예산의 이·전용은 없으며

예비비 사용액은 3억 1,509만 6,000원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 국민연금보험금 부족분 등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는 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할 수는 없으나 이미 성립된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에 대하여 세입의 징수사항과 세출의 집행사항을 심사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어 불합리한 사항은 다음 예산편성이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7. 9

보고자 : 김 완 섭